

울산광역시복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290 호 2021. 5. 13.(목)

규 칙

-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578호[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고 시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98호[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4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99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5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101호[하천 점용 협의(변경허가) 고시] 6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102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허가) 고시] 7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103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8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105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사항 고시] 9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106호[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기간단축) 사항 고시] 10

공 고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633호[하천관리단 기간제 추가채용 시행계획 공고(안)] 11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636호[2021-2022년 어장 및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 · 20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640호[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2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641호[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2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652호[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9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653호[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5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복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복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5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7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2항제1호나목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실과별”을 “부서별”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급보”를 각각 “즉시 보고”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당직휴무의 사용기한을 확대하여 직원의 쉼 권리를 보장하고, 당직근무 인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당직휴무 사용기한을 6주 이내로 확대(제5조)
- 나. 당직원 수를 2명으로 조정(제6조)
- 다. 그 밖에 각종 용어 정비 등(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9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1. 5. 6.
2. 점용·사용의 목적 : 경작
3. 점용·사용의 장소 : 양정동 785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200m²
 - 나. 기 간
 - 2021. 5. 7. ~ 2025.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주*목
 - 나. 주 소 : 울산*** 남구 **로 26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9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1. 5. 6.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통신주 1본)
3. 점용·사용의 장소 : 양정동 771-17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3㎡
 - 나. 기 간 : 2021. 5. 7. ~ 2025.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주)**티
 - 나. 주 소 : 부*광역시* *구 충장대**길 7*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101호

하천 점용 협의(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천 점용협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동 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시 북**장(환경위생과)

나. 주소 : 울산**시 *구 산*로 1*1*(연암동)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이동식 화장실 설치)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당초: 호계동 943-22번지

- 변경: 시례동 7-54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 당초: 170m²

- 변경: 147.5m²

5. 점용 협의 유효기간

2021. 4. 28. ~ 영구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10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1. 5. 11.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노인보호구역 표지판)
3. 점용·사용의 장소 : 중산동 1178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계속 : 0.0028m²
 - 나. 기 간
 - 계속 : 2021. 5. 11. ~ 2035. 0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도시과)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103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정자6길 5-4	정자동 148	2021. 5. 13.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4)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5.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105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년월일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허가기간	점용목적	비 고
		성 명	주 소					
21.05.11	제2021-4호	정명숙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252-3번지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252-3번지	7.5	2021.05.11. ~ 2026.05.10.	횃집 운영을 위한 해수인수 관로 설치	조건부 허 가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106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기간단축) 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기간단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허가기간		점용목적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당초	변경		
제2019 -17호	김말돌 (55.03.15.)	울산광역시 복구 산하동 252-3번지	울산광역시 복구 산하동 252-3번지 일원	18.75	당초 '19.09.18. ~ '24.09.10.	변경 ' <u>19.09.18.</u> ~ ' <u>21.04.30.</u>	횃집운영을 위한 해수인수 관로 설치	기간 단축신청에 따른 변경허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633호

하천관리단 기간제 추가채용 시행계획 공고(안)

하천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할 작업단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채용직종 및 채용인원

직 종	주요업무	근무기간	채용인원
하천관리단	· 경미한 시설물 보수 · 하천정화 · 하천제방 풀베기	2021. 6. ~ 2021. 12. (7개월)	2명

※ 예산사정 등에 따라 인원수 및 근무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2. 접수방법

가. 공고기간 : 2021. 5. 10.(월) ~ 2021. 5. 14.(금)(5일간)

나. 접수기간 : 2021. 5. 17.(월) ~ 2021. 5. 21.(금)(5일간)

다.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2층 건설과 치수팀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3. 채용방법 : 서류전형(1차), 면접시험(2차)

가. 서류전형(1차) : '21. 5. 26.(수) (합격자 개별 통보)

※ 서류 심사는 서류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6명) 선발

나. 면접시험(2차) : '21. 6. 1.(화) 09: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공고 : '21. 6. 4.(금)(합격자 개별 통보)

4.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울산광역시에 되어 있는 거주자

※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자 우대

나.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신체 건강한 자

다.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신체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발행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체검사서에 의함)

- 라. 국가유공자, 취업보호대상자 등은 관련법에 의거 우대
- 마. 하천관리, 녹지관리 등 관련 경험자 우대

5. 근로조건

가. 임금 및 수당지급 기준

- 1) 1일 단가 : 72,220원
- 2) 주차수당 : 1주 근무 만근 시 주1회 1일 지급
- 3) 가족수당 :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함(주민등록기준)
- 4) 지급 및 방법 : 매월 말 및 익월 초 본인 계좌로 입금 조치

나. 근무방법

- 1) 근무일자 : 월 ~ 금요일까지 근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원칙)
- 2)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6. 제출서류(※붙임참고)

- 가. 이력서 1부
- 나. 자기소개서 1부
- 다. 체력시험 응시 동의 서약서 1부
-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바.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최종합격 후 제출
- 사. 국가유공자 및 취업보호지원대상증명서 등 1부(해당자에 한함)
- 아.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반환청구 할 시 반환 가능함
 - ※ 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청구 가능하며 최종합격자 제외
- 나. 최종 합격 후 합격자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할 시 합계점수 차 순위자 채용 시행
- 다. 문의처 : 북구청 건설과 치수팀(☎241-7884)

[붙임 1]

하천관리단 운영 계획표

작업내용	작업 인원	월별 운영계획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하천 유지관리	9명														7개월



※ 복구 관내 모든 하천에 근무할 수 있음

※ 여건에 따라 근무기간 변동될 수 있음

[붙임 2]

하천관리단 심사기준 채점표

응시직렬	하천관리단 기간제근로자(일시사역)	응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 점	평정요소	평정기준점수	위원평정점수
	1. 경력사항(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경력 2년 이상 :10점 ▪ 관련경력 2년 미만 : 5점 ▪ 무경력자 : 0점 	점
	2. 연령(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50세 미만 : 10점 ▪ 만50세 ~ 만60세 미만 : 5점 ▪ 만60세 이상 : 1점 	점
	3. 국가유공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 5점 ▪ 직계가족 : 3점 ▪ 해당사항 없음 : 0점 	점
	4. 거주지(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거주자 : 10점 ▪ 북구 미거주 : 5점 	점
	5. 체력테스트(가) (15점) ※ 남·여 공동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15점 ▪ 중 :10점 ▪ 하 : 5점 	점
	6. 체력테스트(나) (20점) ※ 여성 지원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20점 ▪ 중 :10점 ▪ 하 : 5점 	점
	7. 업무능력(20점) ※ 남성 지원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작동 및 취급요령 상 :20점 ▪ 장비작동 및 취급요령 중 :15점 ▪ 장비작동 및 취급요령 하 : 0점 ※ 예취기, 기계톱, 전정기 등	점
	8. 면접관 의견(30점) (자기소개, 지원동기, 근면성실, 정신자세)	I. 공공기관 근무자로서의 정신자세 (봉사정신, 민원응대요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10점 ▪ 중 : 5점 ▪ 하 : 1점 II.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도, 장비 사용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10점 ▪ 중 : 5점 ▪ 하 : 1점 IV. 예의·품행 및 성실성 (건강상태, 안전의식, 성실성, 일에 대한 열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10점 ▪ 중 : 5점 ▪ 하 : 1점 	점
합 계		점	
면접관직위		성명 (서명)	(인)

[붙임 3]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하 "갑"이라 함)과 _____(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1. 근로계약기간: 2021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사정에 따라 연장 가능)
- 2. 근무 장소: 필요시 북구 관내 모든 하천에 근무할 수 있음.
- 3. 업무의 내용(직종): 경미한 시설물 보수 및 하천정화, 하천제방 풀베기 등
- 4. 근로시간: 09 시 00 분부터 18 시 00 분까지(휴게시간: 12시00분~13시00분)
- 5. 근무일/휴일: 월~금요일까지 근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6. 휴 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지급
- 7. 임금 및 수당

- 1일 임금: 72,220 원
- 수 당: 1주 만근 시 주차수당, 가족수당
- 임금지급일: 매월 말 또는 익월 초 계좌입금
- 지급방법: 을의 예금통장에 입금

8. 근로 준수사항

-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엄수하고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퇴 및 결근 시에는 1일전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지속하지 못할 경우 1월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근로계약의 해약 및 해지

-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본 계약을 해약 및 해지 할 수 있다
- 근로자의 상습적인 지각·조퇴·근무지이탈 및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행정목적 수행에 저해한 때
 - 근무기간 중 음주, 품위손상 행위 등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행위
 - 담당직원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복종할 때
 - 근로자가 근로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표현한 경우

10.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21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성 명 : (서명)

[붙임 4]**이 력 서**

(1쪽)

<필수>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연락처	전화번호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요 경력사항	회사명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자격증 및 특기사항	관련 자격증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여부	보훈번호	

저소득층 여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해당여부		

[붙임 5]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경험 등), 지원하게 된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2021. . . .

작 성 자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636호

2021/2022년 어장 및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4조,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2021/2022년 어장 및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어업·양식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2021. 6. 21.(월)까지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 5. 10.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어장 및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구 분	면허종류	어업·양식업 의 종류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	면적 (ha)	수면위치	승인조건
대체 개발	정치망	정치망	수산동물	1.872	당사동 지선	승인

2. 승인조건

가. 어업·양식업 면허 처분 시 수산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요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

나. 어장·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 승인된 수면이라도 아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어업면허를 처분하지 아니 함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 승인 취소 또는 어업·양식업 면허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어업·양식업 면허를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 2) 어장·면허양식장 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 3) 개발되는 어장 및 면허양식장에 대하여 어장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 4) 양식품목이 양식재해보험 대상이면서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상은 양식어업재해보험 대상물에 한함

3. 신청기간 : 2021. 5. 10. ~ 6. 21.(30일간, 공휴일 제외)

4.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2층 농수산과

5. 제출서류

- 가. 어업·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1부
- 나.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 1부
- 다.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양식업 면허증 또는 어업·양식업 허가증 사본(어업·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 각 1부
- 라. 어업·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 1부
- 마. 포기하려는 어업·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수산업법」 제13조제4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어업·양식업권을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 1부
- 바.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052-241-8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640호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위원회 등 자문기관 설치·운영 조례 규정등 관련 조례 정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가. 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 규정 개정, 신설(안 제5조, 제5조의2)
- 나. 위원회 인용 규정 개정(안 제13조제4항)

3. 개 정 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6월 1일까지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참조 : 문화예

술회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1)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 울산 북구 문화예술회관
- 2) 팩 스 : 052-241-735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 문화예술회관(052-24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2. 그 밖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으로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제13조제4항 중 “문화정책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u>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p>	<p>제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u>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u> 2. <u>그 밖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 <p>② <u>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u></p> <p>③ <u>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으로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④ <u>당연직 위원은 문화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u> 2. <u>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사용료·수강료의 특례 및 감면)</p> <p>① ~ ③ (생 략)</p> <p>④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료 및 수강료를 <u>문화정책위원회</u>의 협의를 통해 감면할 수 있다.</p>	<p>④ <u>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⑤ <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u></p> <p>제13조(사용료·수강료의 특례 및 감면)</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위원회</u>----- -----.</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p>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641호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위원회 등 자문기관 설치·운영 조례 규정등 관련 조례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기능, 구성 및 임기, 운영 규정 삭제(안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 조례로 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함에 따라 규칙 일부 삭제
- 나. 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제4항 ~ 제6항)

3. 개 정 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6월 1일까지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참조 : 문화예

술회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1)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 북구청 문화예술회관
- 2) 팩 스 : 052-241-735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 문화예술회관(052-24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례 제5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를 “별도의 추천으로 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조례 제9조에 따라 정기대관 사용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복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 등
2. 문화예술회관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 공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⑥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승인 후 잔여분이 발생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원회 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이하 “문화예술회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3. 그 밖에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활성화에 관한 중요한 사항 	<p><삭 제></p>
<p>제2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으로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구의회 의원 3. 문화업무담당 부서장 5.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p>제2조의3(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p>	
<p>제5조(사용·수강신청 및 허가 등) ① ~ ③ (생략) <u><신설></u></p> <p>⑤ 제4항외에 사용신청 일자가 결합될 경우 <u>조례 제5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u></p> <p>⑥ <u>수시대관은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u></p> <p>⑦ (생략)</p>	<p>제5조(사용·수강신청 및 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조례 제9조에 따라 정기대관 사용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울산광역시 복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 등</u> 2. <u>문화예술회관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 공연</u> 3. <u>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u> <p>⑤ ----- ---- <u>별도의 추첨으로 결정한다.</u></p> <p>⑥ <u>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승인 후 잔여분이 발생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u></p> <p>⑦ (현행과 같음)</p>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652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기관·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변동 없음(679명)

나. 기관별 정원 조정

- 1) 본청 : △1명(486명 → 485명)
- 2) 직속기관 : △7명(56명 → 49명)
- 3) 동 : 증8명(113명 → 121명)

다.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 1) 5급 : 증1명

○ 직속기관 : 증1명(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증1)

2) 6급 : 증1명

○ 본청 : 증1명

- 행정 증1, 행정·공업 증1, 행정·해양수산·시설 △1

3) 7급 : △2명

○ 본청 : △2명(행정 △2)

4) 8급 : 증1명

○ 본청 : △1명

- 행정 △1, 행정·환경·공업 증1, 공업 증1, 농업 증1, 시설 △1

○ 직속기관 : △8명(간호 △8)

○ 동 : 증8명(간호 증8)

5) 9급 : △1명

○ 본청 : △1명(공업 △1, 농업 △1, 보건 증1)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

4. 개정규칙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2) 전화번호 : 052)241-7102, 팩스번호 : 052)241-7109

3) 전자우편(E-mail) : ginger@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합계	합계		679	485	15	49	9	121(4)
	정무직		1	1				
	일반직		677	483	15	49	9	121(4)
	별정직		1	1				
정무직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677	483	15	49	9	121(4)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5	4		1		
		서기관	3	3				
		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40	24	3	4	1	8
		행정	25	15	3		1	6
		행정/사회복지	3	2				1
		행정/농업/ 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간호/의료기술	2			2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	1					
의무		2			2			
시설		3	3					
농업/해양수산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6급	소계	141	110	3	10	2	16	
		행정	65	53	3	1		8	
		행정/세무	6	6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녹지	2	2					
		행정/의료기술/간호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6	6					
		행정/공업	4	2				2	
		세무	3	3					
		전산	1	1					
		사회복지	11	3					8
		공업	1	1					
		농업	2	2					
		녹지	1	1					
		수의/의무/약무/간호	1					1	
		해양수산	1	1					
		보건	2	2					
		보건진료	1					1	
		공업/환경	1	1					
		시설	14	14					
		방송통신	2	2					
		운전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6					6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7급	소계	213	164	4	15	3	27
		행정	89	66	3	1	3	16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7	4				3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7				
		행정/학예연구	1	1				
		세무	8	8				
		전산	2	2				
		사회복지	14	7				7
		사서	3	3				
		속기	1			1		
		공업	4	4				
		공업/환경	1	1				
		농업	3	3				
		농업/수의/해양수산	1	1				
		녹지	4	4				
		수의	1	1				
		수의/약무/간호	1					1
		해양수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보건	5	4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	2					2
		간호	5					5
		보건진료	1					1
		환경	3	3				
		시설	28	28				
		시설/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4	4				
		운전	3	3				
전기운영	1	1						
농림운영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8급	소계	201	126	3	17	3	52
		행정	72	40	2			30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9	7				2
		행정/사서	3	3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2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시설	7	7				
		행정/방송통신	1		1			
		세무	7	7				
		전산	3	3				
		사회복지	17	6				11
		사서	3	3				
		공업	5	2			1	2
		공업/환경	2	2				
		농업/해양수산	1	1				
		녹지	2	2				
		녹지/시설	1	1				
		해양수산	2	2				
		농업	1	1				
		보건	6	2			4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	4				4	
		간호	13				5	8
		시설	20	20				
		방송통신	2	1				1
		운전	7	6			1	
		방재안전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9급	소계	<u>76</u>	<u>54</u>	2	2	0	18(4)	
		행정	32	20				12(4)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4						4
		행정/사서	1	1					
		행정/녹지	1	1					
		세무	2	2					
		사회복지	9	7					2
		사서	4	4					
		숙기	1			1			
		공업	<u>2</u>	<u>2</u>					
		공업/환경	2	2					
		녹지	2	2					
		녹지/시설	1	1					
		보건	<u>3</u>	<u>3</u>					
		보건/의료기술	1				1		
		시설	6	6					
		방송통신	1	1					
		운전	2			1	1		
		별 정 직	계		1	1			
6급	소계		1	1					
상당	비서		1	1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합계	합계		679	486	15	56	9	113(4)	합계	합계		679	485	15	49	9	121(4)
	정무직		1	1						정무직		1	1				
	일반직		677	484	15	56	9	113(4)		일반직		677	483	15	49	9	121(4)
	별정직		1	1						별정직		1	1				
정무직	구 청 장		1	1					정무직	구 청 장		1	1				
반 직	계		677	484	15	56	9	113(4)	반 직	계		677	483	15	49	9	121(4)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5	4		1				4급	소계	5	4		1		
		서기관	3	3							서기관	3	3				
		기술서기관	2	1		1					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39	24	3	3	1	8		5급	소계	40	24	3	4	1	8
		행정	25	15	3		1	6			행정	25	15	3		1	6
		행정/사회복지	3	2				1			행정/사회복지	3	2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2			2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	1					행정/시설	1		1						
의무		2			2			의무	2				2				
시설		3	3					시설	3		3						
농업/해양수산	1	1					농업/해양수산	1	1								

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6급	소계	140	109	3	10	2	16	일	6급	소계	141	110	3	10	2	16		
		행정	64	52	3	1		8	반		행정	65	53	3	1		8		
		행정/세무	6	6							반	행정/세무	6	6					
		행정/사회복지	3	3							직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서	1	1							직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직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녹지/시설	1	1							직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녹지	2	2							직	행정/녹지	2	2					
		행정/의료기술/간호	1				1				직	행정/의료기술/간호	1				1		
		행정/환경	2	2							직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6	6							직	행정/시설	6	6					
		행정/공업	3	1				2			직	행정/공업	4	2				2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직	행정/해양수산/시설	<삭 제>						
		세무	3	3							직	세무	3	3					
		전산	1	1							직	전산	1	1					
		사회복지	11	3					8		직	사회복지	11	3					8
		공업	1	1							직	공업	1	1					
		농업	2	2							직	농업	2	2					
		녹지	1	1							직	녹지	1	1					
		수의/의무/약무/간호	1					1			직	수의/의무/약무/간호	1				1		
		해양수산	1	1							직	해양수산	1	1					
		보건	2	2							직	보건	2	2					
		보건진료	1					1			직	보건진료	1				1		
		공업/환경	1	1							직	공업/환경	1	1					
		시설	14	14							직	시설	14	14					
		방송통신	2	2							직	방송통신	2	2					
		운전	2	2							직	운전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6					6			직	보건/의료기술/간호	6				6		

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7급	소계	215	166	4	15	3	27	일	7급	소계	213	164	4	15	3	27		
		행정	91	68	3	1	3	16	반		행정	89	66	3	1	3	16		
		행정/세무	2	2					직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7	4				3			행정/사회복지	7	4				3		
		행정/사서	1	1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7							행정/시설	7	7						
		행정/학예연구	1	1							행정/학예연구	1	1						
		세무	8	8							세무	8	8						
		전산	2	2							전산	2	2						
		사회복지	14	7					7		사회복지	14	7					7	
		사서	3	3							사서	3	3						
		숙기	1			1					숙기	1			1				
		공업	4	4							공업	4	4						
		공업/환경	1	1							공업/환경	1	1						
		농업	3	3							농업	3	3						
		농업/수의/해양수산	1	1							농업/수의/해양수산	1	1						
		녹지	4	4							녹지	4	4						
		수의	1	1							수의	1	1						
		수의/약무/간호	1					1			수의/약무/간호	1					1		
		해양수산	1	1							해양수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보건	5	4				1			보건	5	4				1		
		보건/약무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1					1			보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	2					2			의료기술	2					2		
		간호	5					5			간호	5					5		
		보건진료	1					1			보건진료	1					1		
		환경	3	3							환경	3	3						
		시설	28	28							시설	28	28						
시설/방재안전	1	1						시설/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4	4						방송통신	4	4									
운전	3	3						운전	3	3									
전기운영	1	1						전기운영	1	1									
농림운영	1	1						농림운영	1	1									

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8급	소계	200	125	3	25	3	44	일	8급	소계	201	126	3	17	3	52			
		행정	73	41	2			30	반		행정	72	40	2			30			
		행정/세무	2	2							반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직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9	7				2			직	행정/사회복지	9	7				2		
		행정/사서	3	3								행정/사서	3	3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2								행정/환경	2	2						
		<신 설>									<신 설>									
		행정/시설	7	7								행정/시설	7	7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세무	7	7								세무	7	7						
		전산	3	3								전산	3	3						
		사회복지	17	6					11			사회복지	17	6					11	
		사서	3	3								사서	3	3						
		공업	4	1			1	2				공업	5	2		1	2			
		공업/환경	2	2								공업/환경	2	2						
		농업/해양수산	1	1								농업/해양수산	1	1						
		녹지	2	2								녹지	2	2						
		녹지/시설	1	1								녹지/시설	1	1						
		해양수산	2	2								해양수산	2	2						
		<신 설>									<신 설>									
		보건	6	2			4					보건	6	2			4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	4				4					의료기술	4				4			
		간호	13				13					간호	13				5		8	
		시설	21	21								시설	20	20						
		방송통신	2	1				1				방송통신	2	1				1		
		운전	7	6			1					운전	7	6			1			
방재안전	1	1							방재안전	1	1									

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9급	소계	77	55	2	2	0	18(4)	일 반 직	9급	소계	76	54	2	2	0	18(4)			
		행정	32	20							12(4)	행정	32	20					12(4)	
		행정/세무	2	2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4								4	행정/사회복지	4							4
		행정/사서	1	1								행정/사서	1	1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1	1						
		세무	2	2								세무	2	2						
		사회복지	9	7							2	사회복지	9	7						2
		사서	4	4								사서	4	4						
		속기	1		1							속기	1		1					
		공업	3	3								공업	2	2						
		공업/환경	2	2								공업/환경	2	2						
		농업	1	1								농업	<삭 제>							
		녹지	2	2								녹지	2	2						
		녹지/시설	1	1								녹지/시설	1	1						
		보건	2	2								보건	3	3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	1					1		
		시설	6	6								시설	6	6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1	1						
		운전	2			1	1					운전	2			1	1			
별	계		1	1					별	계		1	1							
정 직	6급	소계	1	1					정 직	6급	소계	1	1							
	상당	비서	1	1						상당	비서	1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653호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가.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른 부서장 직급 규정

나. 2021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 사항 반영 및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

2.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 사항 반영

1) 관광해양개발과, 사회복지과 부서명 변경사항 반영(안 제3조, 제4조)

○ 관광해양개발과 → 관광과

○ 사회복지과 → 노인장애인과

2) 건강증진과 신설 및 건강증진과장 직급 규정(안 제8조)

나.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별표)

- 1) 기획예산담당관 : 청년정책 사무 삭제
- 2) 경제일자리담당관 : 청년정책 및 지원 사무 신설
- 3) 문화체육과
 - 예술창작소 운영 관련 사무 신설
 - 의병 추모제 등 의병 관련 사무 신설
- 4) 관광해양개발과
 - 연안관리, 공유수면 관리 관련 사무 삭제
 - 몽돌 침식 및 유실방지 대책 및 바다행정봉사실 운영 사무 삭제
- 5) 농수산과
 - 연안관리, 공유수면 관리 관련 사무 신설
 - 몽돌 침식 및 유실방지 대책 및 바다행정봉사실 운영 사무 신설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다.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 18: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2) 전화번호 : 052)241-7102, 팩스번호 : 052)241-7109

3) 전자우편(E-mail) : ginger@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관광해양개발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행정과”를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별표의 기획예산담당관 분장사무란 중 제85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경제일자리담당관 분장사무란 중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별표의 문화체육과 분장사무란 중 제63호 및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3. 예술창작소 운영에 관한 사항

64. 의병 추모제 등 의병에 관한 사항

별표의 부서명란 중 “관광해양개발과”를 “관광과”로 하고, 같은 표의 관광과(기존의 관광해양개발과) 분장사무란 중 제29조 및 제32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부서명란 중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한다.

별표의 농수산과의 분장사무란 중 제98호부터 제10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8.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연안정비사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9.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등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100. 몽돌 침식 및 유실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1. 바다행정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2. 연안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문화체육과장·교육청소년과장·<u>관광해양개발과장</u>·도서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p>	<p>제4조(행정지원국) ----- ----- -----<u>관광과장</u>----- ----- -----.</p>
<p>제5조(복지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u>사회복지과장</u>·가족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수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p>	<p>제4조(복지환경국) ----- ----- ----- <u>노인장애인과장</u> ----- ----- ----- ----- ----- ----- ----- -----.</p>
<p>제8조(소장 및 하부조직) ① (생략)</p> <p>② 보건소장 밑에 <u>보건행정과</u>를 둔다.</p> <p>③ <u>보건행정과장</u>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p>	<p>제8조(소장 및 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u>-----.</p> <p>③ <u>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u>-----.</p>

신 · 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서명	분 장 사 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기획예산 담당관	1. ~ 84. (생 략) <u>85.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u>	기획예산 담당관	1. ~ 84. (현행과 같음) <u><삭 제></u>
경제일자리 담당관	1. ~ 71. (생 략) <u><신 설></u>	경제일자리 담당관	1. ~ 71. (현행과 같음) <u>72.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문화체육과	1. ~ 62.(생 략) <u><신 설></u> <u><신 설></u>	문화체육과	1. ~ 62.(현행과 같음) <u>63. 예술창작소 운영에 관한 사항</u> <u>64. 의병 추모제 등 의병에 관한 사항</u>
<u>관광해양 개발과</u>	1. ~ 28. (생 략) <u>29.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연안정비사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u> 30. ~ 31. (생 략) <u>32. 공유수면점사용 및 매립 등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u> 33. ~ 36. (생 략) <u>37. 몽돌 침식 및 유실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u>38. 바다행정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u> <u>39. 연안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u>관광과</u>	1. ~ 28. (현행과 같음) <u><삭 제></u> 30. ~ 3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3. ~ 36.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사회복지 과</u>	1. ~ 117. (생 략)	<u>노인장애 인과</u>	1. ~ 117. (현행과 같음)
농수산과	1. ~ 97.(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농수산과	1. ~ 97. (현행과 같음) <u>98.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연안정비사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u> <u>99. 공유수면점사용 및 매립 등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u> <u>100. 몽돌 침식 및 유실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u>101. 바다행정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u> <u>102. 연안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실·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울산광역시 복구(이하 “구”라 한다)본청의 실·국장 및 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